

은퇴보조기금 시행규정

본 시행규정은 403(b) Plan 에 가입하지 못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은퇴 연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후생세칙 제 8 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.

1. 은퇴보조기금

한인총회는 매년 교회가 납부한 상회비의 일정 부분을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은퇴 보조기금으로 적립한다. 비율은 매년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기금은 ADF 와 같은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관리한다.

2. 은퇴보조금의 인출은 원칙적으로 은퇴, 사역 종결, 전출에 한 한다. 만 60 세 또는 한인총회 사역 만 10 년 되는 해의 12 월 31 일을 기준으로 둘 중 빠른 시점으로 기산한다. 기산점 이후에 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적립된 원금의 100%를 지급한다. 기산점 이전에 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지급은 다음 규정을 따른다.

- (1) 한인총회 사역 후 5 년 미만, 60 세 이전에 인출 사유가 발생하면 인출권을 상실한다.
- (2) 인출 사유 발생 시점이 60 세 미만이며, 한인총회 사역 후 5 년 이상, 10 년 미만인 경우 기산점을 중심으로 부족한 연 수대로 1 년에 10%씩 감하여 지급한다.

예. 40 세에 사역을 시작하여 48 세에 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.

60 세 미만이고, 한인총회에서 8 년간 사역했으므로 적립금의 80% 지급

예. 30 세에 한인총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62 세에 은퇴하는 경우.

60 세 이후이므로 적립금의 100% 지급

예. 35 세에 한인총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55 세에 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한인총회 근속이 10 년이 넘었으므로 적립금 100% 지급

예. 55 세에 한인총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62 세에 은퇴하는 경우.

60 세 이후이므로 적립금의 100% 지급

예. 28 세에 한인총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4 년 8 개월 근속한 후 한인총회를 떠나는 경우 한인총회 근속이 5 년 미만이므로 적립금의 0% 지급

3. “은퇴보조기금”에서 발생하는 투자 소득의 사용은 후생복지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실행위원회가 결정한다.